

# 상·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!

시행일: 2024년 12월 부과 고지분부터

## 감면대상

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
○ 중복 감면 불가

## 감면내용

월 최대 12,300원 감면(가정용 10톤에 해당되는 사용분)  
○ 10톤 미만은 실사용량  
(상수도 4,400원, 하수도 6,200원, 물이용부담금 1,700원\*) \*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은 부담금 제외

## 신청기간

2024. 10. 21.~

## 신청방법

-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방문접수
- ② 용인특례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→ 시민참여  
→ 온라인신청 → 장애인감면



장애인 감면신청 바로가기

## 제출서류

감면신청서, 장애인증명서  
○ 감면신청일이 수도사용기간에 포함되는 달부터 감면 시작  
○ 감면 신청서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비치

## 문의사항

- 용인시콜센터 ☎ 1577-1122
- (기흥구,수지구) 수도행정과 ☎ 031-6193-9171~9177
- (처인구) 하수행정과 ☎ 031-6193-9331~9332